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4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일고무벨트㈜(타니아마켄), ②쌍용건설㈜(김인수),
③롯데건설㈜(박현철), ④지에스건설㈜(허윤홍),
⑤㈜케이씨씨건설(심광주), ⑥㈜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정용찬),
⑦(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희근),
⑧㈜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박관영)

나. 전화번호 : ①02-2168-9000, ②02-3433-7114, ③02-3480-9114, ④02-2154-2120,
⑤02-513-5748, ⑥031-552-6080, ⑦054-279-6333, ⑧02-2115-80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5호

3. 명칭 :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철골구조 건축물의 보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대한 것으로,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공개선형 합성보 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기존 공법과 동일하면서도 쉽고 빠른 공사가 가능
- 중앙부 U형 단면의 최적설계를 통해 층고 절감
- U형 단면 상부에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위하여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사용으로 현장에서의 스터드볼트 시공의 생략이 가능하여 시공성을 개선

<범위>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 및 U형 단면 상부에 전단연결재 앵글로 이루어진 합성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8.02.06. ~ 2026.02.0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